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2023년도 하반기 반부패·청렴 중점 추진과제

2023. 9.



국민권익위원회

순서

I.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여건	1
1. 부패를 둘러싼 환경과 인식의 변화	3
2.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카르텔 부패	6
II. 반부패·청렴 정책 3대 중점 과제	7
1. 전관특혜 등 부패 카르텔 혁파	9
2.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근절 등 관리 강화	15
3.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및 공정채용 문화 정착	20
III.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	25
1. 생활 속 규범으로 반부패 행위규범 내재화	27
2.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39
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촉진	43
4.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공직사회 청렴역량 강화	46
5. 촘촘하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49

순서

[참고자료] 53

1. 2022년~2023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
현황 55
2. 청렴연수원 공유 청렴교육 콘텐츠 목록 57
3. 2023년 하반기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일정 58
4.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안내문 59

[부 록] 61

1.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63
2. 부서별 업무담당자 68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여건 및 현황

□ 공공부문의 부패 양태 다변화

- 최근 우리사회는 코로나-19 대응과 일상회복, 자연·산업재해 대응, 4차 산업혁명 고도화 등 정치·행정·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 경험
 - 이는 정책 결정 및 업무 절차 간소화, 관료 재량권 및 국가 재정의 확대, 지방의 기능·권한 강화 등 행정 환경의 변화도 야기
-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패도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외에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비금전적 부패나 민관유착 비리 증가



□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 및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 보호무역 기조 확산, 불확실성 확대 추세로 국제사회에서도 투명성과 신뢰, 반부패 역량이 국가·사회의 중요 역량으로 부각

※ G20 반부패 각료회의는 부패척결을 위한 법집행 관련 국제협력·정보공유 강화 및 자산회복 체계 강화, 부패예방·척결 담당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효율성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 각료회의 결과문서 및 의장요약문’ 채택('23.8.12.)

- 국가청렴도(CPI) 등 각종 국제 반부패 지수가 상승 추세이나,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국력에 비추어 낮은 평가



< 국가청렴도(CPI), TI, ’23.1. >



< 뇌물위험매트릭스(BRM), TRACE, ’22.11. >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3년도 국가경쟁력평가는 총 64개국 중 28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
 - 분야별로 경제성과는 큰 폭 상승(8단계↑), 기업효율성 및 인프라는 전년과 동일한 반면, 정부효율성이 지속 하락 추세(2단계↓)
 - 부패와 관련된 지표 중 뇌물공여·부패비리는 개선 추세를 보이나, 투명성, 관료주의, 법·제도적 규제 등이 하락·답보 상태

< IMD 국가경쟁력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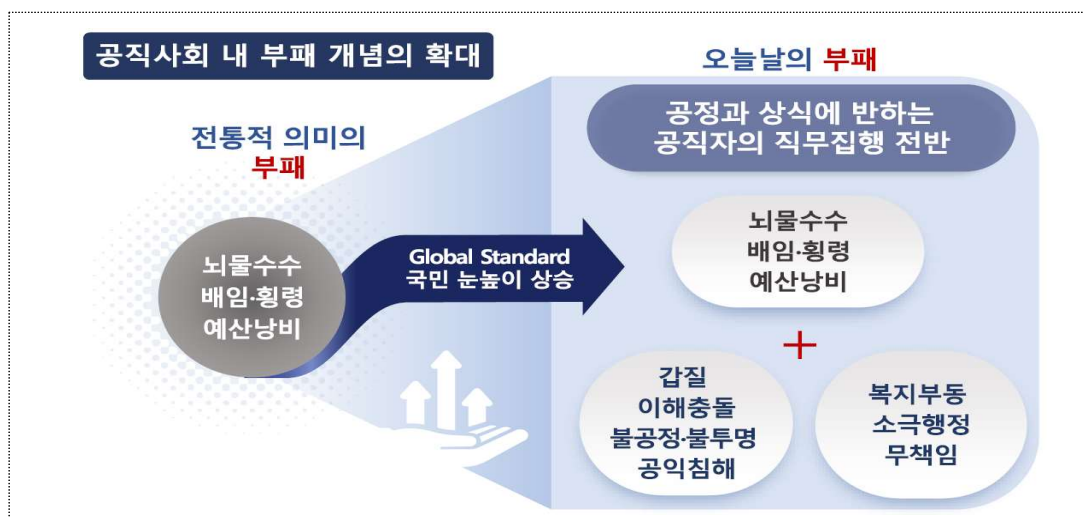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IMD 국가경쟁력 순위	29/63	27/63	28/63	23/63	23/64	27/63	28/64	↓ 1
1. 경제성과	22	20	27	27	18	22	14	↑ 8
2. 정부효율성	29	29	31	28	34	36	38	↓ 2
뇌물공여·부패비리	40	35	30	31	33	33	32	↑ 1
정부투명성	46	35	42	32	36	38	42	↓ 4
법제도적 규제	54	58	56	55	58	59	61	↓ 2
관료주의	44	47	50	51	58	57	60	↓ 3
3. 기업효율성	44	43	34	28	27	33	33	—
4. 인프라구축	24	18	20	16	17	16	16	—

□ 국민들의 부패 인식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직사회

- 청렴문화 확산과 일련의 대형 부패사건 이슈 등을 통해 국민들은 청렴·공정을 보다 중요가치로 인식*하고 기준도 높아지는 추세

*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우선 해결과제로 ‘민생경제 회복’(25.8%)과 함께 ‘부정부패 척결’(18.1%), ‘공정사회 실현’(14.7%), ‘권력기관 개혁’(10.4%), ‘정치 개혁’(7.3%) 등 응답 (’22.3.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에서 나아가 부정청탁, 내부정보 사적이용, 직권남용·갑질, 소극행정, 불공정·불투명한 직무집행까지 부패로 인식



- 청렴에 대한 높아진 기준으로 국민들은 공직사회와 우리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에 대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인식

※ 국민권익위의 일반국민 1,400명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22.12.) ‘우리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8.6%, ‘우리사회 전반이 부패하다’는 응답은 54.4%

- 국민 눈높이와 다양해진 부패양태에 대응해 반부패 관련 법령*이 지속 정비됐으나, 생활 속 규범으로 완전히 자리잡지는 못한 상황

*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여년 간 공익신고자 보호법(’11), 청탁금지법(’16), 공공재정환수법(’20), 이해충돌방지법(’22)을 제정·시행

⇒ 부패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높아진 기준과 생활밀착형 카르텔 부패 등 잔존하는 부패 관행 등으로 인해 일회적·단편적인 반부패·청렴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내·외 인식 개선에 한계

《 대통령 말씀 》

- ▶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이고,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23.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환영사)
- ▶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이며, 민주사회를 무너뜨리는 내부 요인은 부패한 카르텔이니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 달라**(‘23.7월, 신임 차관 오찬)
- ▶ **이권 카르텔은 손쉽게 편리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23.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 **잔존하는 불공정·불합리 관행과 카르텔 부패**

- 우리사회 청렴수준과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분야는 **부패·이권 카르텔과 부조리한 관행이 잔존**
 -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LH 부실시공 관련 전관특혜 의혹,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누수 사례 등은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성에 대한 불신 야기
- 최근의 카르텔 부패는 **민간 또는 민간·공공 점점 부패를 포괄**하는 보다 고도화되고 복잡한 부패 유형
 - ※ LH 부실시공 사태 관련 3,719명 패널 대상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8.3%가 ‘LH와 연관된 건설 이권 카르텔이 존재할 것’으로 응답(‘23.8월, 리얼리서치코리아)

□ **정부 2년차, 국가청렴도 지속 향상을 위한 역량 집중 필요**

- 정부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카르텔 부패 해소 없이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청렴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요원한 상황
 - 국민안전 및 생활경제, 공정사회 기반 등 국민생활이나 정부 신뢰와 직결되는 카르텔 부패 해소가 우선 과제
-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카르텔 부패 성격 상 **범정부적 종합 대응 필요**



반부패 · 청렴 정책 3대 중점 과제

- ◇ 정부신뢰와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전관특혜 비리 등 공공·민간 카르텔 부패 혁파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운영 내실화 등 범정부적 방안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전관 관리 제도 사각지대 잔존

- (취업심사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의 제한으로 업무연관성 높은 기관·단체 등에 재취업한 퇴직자와의 접촉 가능성 여전
 - (심사대상자) '21년 LH 사태 이후 LH 취업심사 대상이 확대(임원 → 직원 2급 이상)되었으나, 전체 직원의 5% 수준에 불과
 - (심사대상기관) 다수의 주요 공공기관·단체가 제외되어 있고, 민간 분야의 경우 공공계약 수주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금·외형거래액 기준만으로 확정하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취업심사 대상기관 기준】

- (영리분야) 일정 자본금(10억원)·연간외형거래액(100억원)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사기업체, 연간외형거래액 기준을 충족하는 법무·회계·세무 법인 등
 - ※ '23.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이고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추가 포함('24.1.부터 적용)
- (비영리분야) 공운법상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등
 - ※ '23년 기준 공운법상 준시장형 공기업 19개 중 10개(LH, 한국마사회 등) 미포함, 준정부기관 55개 중 39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미포함
- (특정분야) 방산(방산업체, 군수품 무역대리업체), 국민안전(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을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심사대상 협회) 취업심사 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

【취업심사 대상 사각지대 관련 사례】

- ○○○○ 퇴직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비영리법인인 ○○○○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의 화물관리 위탁사업을 독점(10년간 수입이 약 2,333억원)하고 있어 지속적인 전관특혜 관행 의혹('22.10월 국정감사)
- ◇◇◇◇ 소속 중령들이 전역 전 3년 이상 정부출연기관 파견을 통해 취업심사를 우회(본부장급·수석급 이상만 심사 대상)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바로 취업('22.8월 언론보도)
※ 해당 정부출연기관은 사업자 선정 등 △△분야 사업 과정 전반에 영향력 상당
-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등을 위한 신생 특수목적법인(SPC)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자본금·연간외형거래액 기준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 출신 인사 등이 자유롭게 취업('22.10월 언론보도)

○ **(취업현황관리)**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공·민간 분야 재취업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퇴직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민·관 부패의 접점이 되는 경우 발생

- 전관이 공공계약 수주의 창구가 되거나, 전관 기관·업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관리 부재

※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의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만 경영공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국민권익위, '21.7., 12.)

- (개요) 99개 개발공기업 대상 기관의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 부패 제도개선안 권고(‘퇴직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 방지 관리 강화’ 내용 포함)
- (전관 관리 관련 주요내용) ①계약 시 퇴직자(임원, 계약이행 업무담당 직원) 명단 제출 및 ②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업무관련성 신고(예시 :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경위 등 보고) 의무 신설(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

○ **(공공계약제도)** 계약과정에서의 퇴직자 또는 전관업체 등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으로 불공정 계약

- (국가·지방행정기관) 퇴직자 또는 전관 업체·단체와의 계약 제한 관련 규정·기준 부재

※ 정부부처 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23.6.30.) 국회 계류 중

-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의계약 외의 일반 계약 등*에 대한 퇴직자 관련 규정·기준이 없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퇴직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만 파악·관리가 가능해 사각지대 발생

*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이 '16.1월~'21.3월 기간 중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전체 계약의 21.5%인 2만 6,616건이며, 이 중 수의 계약 건수는 8,162건으로 30.6% 수준('22.6,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8조는 수의계약 시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해당 법인 임원의 명단 제출·확인 의무)이나 퇴직자 본인, 퇴직자 모임·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을 금지

⇒ 취업심사 및 공공계약 제도 등 퇴직자 전관 비리와 연계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제도 재정비 필요

□ 느슨한 전관 관리 제도 운영으로 부조리한 관행 잔존

- (취업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제도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나, 높은 취업심사승인율(취업가능·승인 비율)*로 제도 실효성 저하

* 승인율 추이(%) : ('18) 83.9 → ('19) 78.0 → ('20) 81.2 → ('21) 83.8 → ('22) 84.4

※ '22.~'23.7 중 LH 취업심사승인율은 95.2%(21명 중 16명 가능, 4명 승인, 1명 불승인)

- 취업심사대상 공직자임에도 심사없이 임의 취업하는 사례도 빈발

※ 임의취업 현황 : ('17) 331건 → ('18) 421건 → ('19) 392건 → ('20) 538건 → ('21) 309건 → (~'22.8.) 90건 ('22.9월, 인사처 자료 분석, 진성준의원실)

- (계약·관리) 계약 공모·심사 시 퇴직자(업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심사 평가위 내부위원과 사전접촉 했음에도 감점하지 않거나, 퇴직자가 없다는 허위서류 제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행적 제도운영 사례 적발

※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보고서('22.6, 감사원)

⇒ 전관 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이행관리, 실태점검 강화 및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필요

2 중점 추진 방향

□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및 기 개선과제 이행관리 강화

- (제도개선)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기득권 카르텔, 특혜 제공 등 불합리한 관행과 유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 (권고 이행관리) 그간 국민권익위의 전관특혜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현황 점검 및 이행 독려

【전관특혜 해소 등 관련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추진 사례】

-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3.7.) : 지방행정동우회(지방 퇴직공무원으로 구성)의 사업비 외 운영비 지원 특혜 요소 등 개선
-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21.7., 12.) : 99개 개발공기업 대상 전관 특혜 관리방안 마련
-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1.9.) :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재취업 심사규정 마련 등 위임근거 명확화,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권고
-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17.12.) : 퇴직자 수의 계약 금지규정 보완·마련, 퇴직자단체 대상 근거없는 예산지원 특혜 금지
-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15.10.) : 퇴직 공직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 정비 및 집행 사후관리 강화

- (분야별 자체 개선방안 마련) 각급 기관별(산하 공공기관 포함) 전관특혜 등 카르텔 부패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제도운영 실태점검 강화

※ '24년 종합청렴도 평가 시 청렴노력도 평가지표(부패취약분야 개선)에 분야별 전관 특혜 등 불합리한 관행·부패 제도개선 및 자체 감사·점검 내용도 포함하여 평가 검토

□ 카르텔 부패를 유발하는 행위규범 위반 실태 점검

- (이해충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수의 계약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퇴직자·지인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현황 실태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 **(청탁금지·행동강령)** 사회적 영향이 큰 전관 부정청탁 및 행동강령 위반사건 등에 대한 즉시 조사·적발 및 후속조치, 관계기관 전파 등을 통해 재발 방지

□ 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카르텔 부패 해소 지원

- **(집중신고 활성화)** 음성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부패·이권 카르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에 접수처 신설
 - 공공주택사업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분야의 전관특혜, 부실 시공 등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8.10.~10.8.)

<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구 분	주요 내용
접수 방법	①방문 및 우편(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및 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②인터넷(청렴포털(www.clean.co.kr)), ③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신고대상	①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②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③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보호·보상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비실명 대리신고 등) 및 지원(최대 30억원 보상금 및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 **(홍보 강화)**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사건 사례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 보도자료 및 언론브리핑, 공공기관 홈페이지, KTX역사 내 홍보, 온라인·SNS 광고 등

[협조 요청 사항]

- 전관특혜 등 카르텔 부패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 과정에 적극 협조 및 기 권고 과제 이행 철저(해당 공공기관)
- 분야별 카르텔 부패 제도개선 방안 마련·적용 및 자체 감사·점검 활성화(전 공공기관)
- 공직자 행위규범 제도 운영 실태점검 및 위반사건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 및 후속조치 내용 이행 철저(전 공공기관)
- 집중신고기간(8.10.~10.8.) 홍보 요청(전 공공기관)
 - 집중신고기간 홍보 배너를 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협조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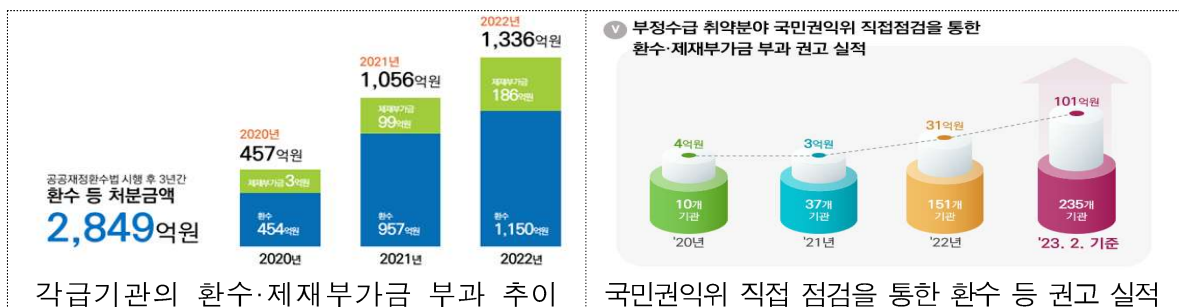
- ◇ 철저한 이행실태 점검 및 실태조사·개선, 신고자 보·포상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로 나랏돈 부정사용 관행 근절

1 현황 및 문제점

《대통령 말씀》

- ▶ 국가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야 한다. 현재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22.12월, 국무회의)
- ▶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23.6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관련)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 이후, 308개 공공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금액은 증가 추세
- 국민권익위가 취약분야를 점검해 권고한 부가금 부과액도 대폭 증가
- ※ **취약분야**(유가보조금, 농업직불금)에 대해 소관부처(국토부,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대상기관에 약 **101억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이행 권고**('23.2월)



- 공공재정지급금의 규모와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유발하는 부정수급 행위 관리·감독 수요 증가
- ※ 범정부적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23.6월, 국조실 주관) 결과 약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보조금 사용·정산 상 문제점 적발

⇒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 보조금 누수 방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공공 재정환수제도 내실화** 및 **효과적인 부정수급 행위 적발 강화 필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주요 사례

1. 연구개발비(R&D) 등 과학기술 분야 부정수급 사례

-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아 편취하고,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
*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로 참여연구원을 등록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보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 사무용 의자 관련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대한 시험용 제품의 재료를 구매하지 않고 자사 제품 제작비용에 사용하였음에도, 시험용 제품의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5년간 참여제한 조치 /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2. 일자리안정자금 등 사회·복지 분야 부정수급 사례

-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워라벨 일자리장려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부)
- 서로 공모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근로와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하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공단) /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부),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등을 지원받았으나, 직원 채용과 제품 개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장애인 작업시설 구축 지원금과 신제품 개발 지원금을 받으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환수 및 5년간 참여제한 조치(○○시, ○○부), 제재부가금 부과(○○부) /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주요 사례

3. 어린이집 보조금 등 교육 분야 부정수급 사례

-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행정업무, 전화응대를 하는 **자신의 딸을 방과후 과정반 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환수(○○교육청) /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 A를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A의 인건비를 계좌로 송금한 후 매월 일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 일학습병행제 현장훈련(OJT)를 시행하면서 **실제로 훈련은 실시하지 않고 학습활동서 및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4. 정부지원금 등 경제·기타 분야 부정수급 사례

- 유가보조금으로 구매한 경유를 일반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시)
- 운송사업자 ○○○는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계속 결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 국민권익위 실태점검 후 환수 등 조치 이행 권고
- 배우자가 있을 뿐 아니라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시) /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 의료(분만)취약지, 응급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비를 편취
*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 거주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적합한 교통서비스에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인 ○○운수는 **보조금을 식사비 등 목적외 사용**
* 국민권익위 실태점검 후 환수 등 조치 이행 권고

2 중점 추진 방향

□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 관리·감독 강화

- (정기 점검) 중앙행정기관 등 308개 공공기관 제재처분 관리실태 하반기 점검 실시(~12월)
 - 상반기 점검 결과 제재부가금 미부과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한 후속 전수 점검을 통한 제재조치 이행(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권고 병행
- (점검 협조)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사용*(314억 원)에 대한 부처별 제재조치(환수,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이행실태 점검(10월~)
 -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국무조정실 주관, '23.6.)
- (자체점검 강화) 공공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 및 연 2회 이상 취약분야 자체점검 노력 등을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
 - * 각급기관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더 많이 환수·제재부가금 부과를 하는 경우 및 타기관 대비 부과 실적이 높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부정수급 관련 신고 빈발분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취약분야 발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7.11.~10.10, 3개월간)해 민생분야 및 민간 단체·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 적극 발굴
 - ※ 5대 빈발(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분야 등 신고 활성화 유도
- (취약분야 집중점검) 신고사례 및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굴된 취약분야 점검·개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취약분야 실태조사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 ※ 예시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투자사업 등

□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한도액 상향

- **(포상금 상향)**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상향(2억 → 5억 원)하여 내·외부 신고 활성화

* 현재 입법예고(8.25.~10.4) 및 사전영향평가 진행 중

- **(기관 공조 강화)** 각급기관과 공조해 보·포상금 지급 확대 등 추진
 - 각급기관은 ①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②포상금 지급기준 부합 대상자를 국민권익위에 적극 추천**
 - * 국민권익위 외 타 기관 신고 건도 보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면 지급 가능
 - ** 공공기관 재산회복, 제도개선, 관련자 처벌 등 지급기준 부합시 지급 가능
 - 부정수급 근절에 공로가 있거나 포상 대상자를 적극 추천한 각급 기관의 담당자 등에게는 부패방지 유공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협조 요청 사항]

-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처분 관련 자료 제출(대상 308개 공공기관)
 - ※ 각급기관별 '23년 상반기 부정수급 제재처분 현황 공문 제출(~9.8.)
- 후속점검을 위한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해당 공공기관)
- 국무조정실 주관 보조금 감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이행실태 월별 점검자료 제출 협조(해당 중앙부처)
- 기관별 자체점검 적극 참여 및 '정부지원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각급기관의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적극 홍보 협조(전 공공기관)
- 권익위에서 취약분야 합동점검 요청 시 적극 참여(해당 공공기관)
- 권익위외 타기관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 기준 대상자를 권익위에 적극 추천(전 공공기관)
- 부정수급 근절 공로자 등 부패방지유공 대상 추천(전 공공기관)

- ◇ 공공기관 채용비리 현안과 위반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태점검, 공정채용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채용 문화 정착

1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채용비리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상황
 - ※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수사의뢰·징계요구) 적발건수 : ('18) 338건 → ('19) 182건 → ('20) 83건 → ('21) 76건 → ('22) 47건
 - 우리사회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추세도 정체
 - ※ 우리사회에서 취업기회가 공정(매우+약간)하다는 비율(%) : ('18) 34.4 → ('19) 39.4 → ('20) 47.6 → ('21) 54.1 → ('22) 48.7 (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최근 선관위 직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용 세습·현대판 음서제라는 국민적 비판과 분노 대두
-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공정채용 관련 기준 및 관리감독 체계 부재로 채용비리가 지속 발생하는 등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 존재

⇒ 국민, 특히 청년세대에게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비리 사건 및 실태 조사·점검과 함께 채용비리 예방 및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안착 촉진 필요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형 주요 사례

1. 특정한 채용을 위한 부당 지시·개입 등 부당행위 사례

- ○○도 사업소장이 자신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기준 변경을 부당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 ○○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한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여 합격하게 한 혐의로 관련자 각 징역 1년 6개월·1년 선고
- ○○군수가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청탁 지원자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 ○○기관은 특정한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대행업체에 이미 심사가 완료된 **서류전형 평정표상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부당 지시**하였고, 그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가 변동
- ○○기관 신규직원 채용 면접평가 중 시험장에서 피신고자가 인사담당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특정 심사위원의 **회피신청서를 찢어버리고** 해당 위원을 면접평가에 참여시켜 **면접점수를 다시 집계하는 등**으로 **평가 결과 순위를 조작**하여 특정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함
- ○○기관 면접시험 종료 이후 면접 심사위원은 자신이 희망하던 특정한이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면접시험 평정표를 사후에 조작**하였고, 그 결과 해당 특정한이 최종합격
- ○○기관은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
- ○○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특정한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관련자 벌금형 선고

2. 채용 심사 과정상 미비로 인한 부적정 채용

-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는 자가 채용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척·회피 없이 해당 응시자와 근무경력 있는 내부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후 심사하였고, 근무경력자가 최종 합격
- ○○기관은 특정 응시자의 **자격증이 지원분야와 무관하고, 채용계획 및 공고상 인정되지 않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계획을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합격** 처리
-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시험위원 2명이 응시자를 절반씩 나눠 평가한 뒤, 나머지는 상대방 점수를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의 **경력 점수 등을 과다 산정**하여 서류전형 결과에 오류 발생

2 중점 추진 방향

□ 채용비리 현안 즉시 대응 및 철저한 신고사건 처리

- (현안 대응) 선관위 자녀 채용비리 의혹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점검·조치 등을 통해 의혹 즉시 대응·해소

※ 필요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 추진 개요 및 경과】

- (조사개요)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의 최근 7년('17.1.~'23.5.)간의 공무원 경력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초·현장 조사(6.14.~8.4.) 실시
※ 국민권익위·인사처·경찰청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단 운영(단장: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 (조사결과) 특혜성 채용, 합격자 부당 결정 등 채용공정성 훼손 사례 총 353건 적발
※ (사례 1) 일반임기제 채용을 통해 임용한 자(1년 임기)를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별도 시험절차 없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사례 2) 전문임기제 채용 시 동일 경력을 제출한 응시자 2명 중 당시 선관위 임기제로 근무 중이던 A에게는 해당 경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선관위 근무경력이 없던 B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B를 서류전형에서 탈락 처리
(사례 3) 한시임기제(9호) 채용 시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하여 □□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A, ▲▲구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B 등 선관위 관련자 2인만 응시하였으며, 2명 모두 최종 합격
- (후속조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채용 관련 정책·제도 개선사항 제언 등 추진

- (사건 처리)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설치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23.1월)를 통해 채용비리 사건 상시 접수·처리

□ 채용비리 사각지대 관리 및 점검

- (사각지대 관리) 기관별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23.3. 권고) 마련 여부 이행(이행기한 : ~'23.9.) 점검(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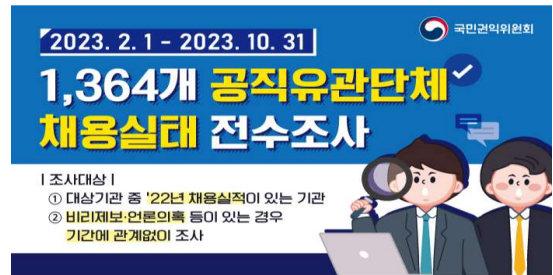
* 행정기관의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개별 채용 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31개 항)에 대한 표준 규정(안) 및 서식 등을 제시

※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마련 이행 여부는 '23년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에 반영

※ ('23년) 기관별 인사규정 반영 여부 점검 → ('24년) 채용기준 준수 여부 정기 점검

○ (전수조사) '23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조사 추진(2~10월)

- 전체 공직유관단체 중 전년도 채용실시 기관(약 1,320개) 대상 '22년 채용과정의 적정성 여부 조사(감독기관 및 국민권익위 조사 병행)



- 결과발표(12월) 후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권고 등 후속조치 관리

[협조 요청 사항]

○ '23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전수조사 후속 조치(비위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등) 및 제도개선 적극적 이행 및 점검 협조

○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에 대한 각 기관별 자체 '공정채용 기준' 마련(전 행정기관)

※ 제도개선 권고 이행기한('23.9월) 준수 및 이행실적 제출(~9월 말), 10월부터 이행실태 점검 예정

○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시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 등 적극 협조 (해당 공공기관)

- 채용비리 의혹 신고사건 조사기관 송부 시,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실시 및 권익위로 조사결과 통보 등 협조



2023년도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

1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시행

- ◇ 운영상 개선사항 및 명확한 해석기준 제시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실태조사 및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 안내

- (업무편람 배포) 주요 유권해석 사항 관련 명확한 법령 해석 기준 제시 및 '22년 실태조사에 따른 제도운영상 개선사항 안내(~10월)

【안내 사항 주요 내용(안)】

- ❶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세부 운영 기준 안내
- ❷ 승진·전보·평가 등 업무 관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발생 기준 명확화
- ❸ 법령·기준에 따른 당연직 임원 관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완화
- ❹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영어 및 중국어 번역본 제공

- (권역별 설명회)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대상 제도 개선사항 안내 및 유의사항 공유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8~9월)

□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운영

- (유권해석) 각급 기관의 법 해석·적용 및 신고사항 조치 관련 해석 요청에 대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통일된 해석기준 제시(연중)

※ 쟁점사항은 반부패규범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해석 기준의 합리성 제고

- (실태조사) 각급 기관의 행위기준별 제도운영 현황, 법 위반신고 처리 현황 등 점검 실시(9월~)
- (신고처리)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법 위반신고의 신속·공정한 조사·처리(연중)

□ 교육·홍보를 통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내재화

- (교육)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 실시
 - 중앙부처·지자체·지방의회·공직유관단체 등 기관 유형과 교육 수요자의 권한범위, 직무특성 등을 반영한 직접교육 실시(연중)
 - (홍보) 법 인지도와 규범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전략 홍보
 - (공직자) 의무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유형별 유권해석 및 법 위반신고 사항을 담은 사례집, 리플릿 등 발간(10~12월)
 - (국민) 공직자에 대한 법 위반행위 신고 등 국민의 견제·감시 역할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국민 참여 홍보(연중)
- ※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 수렴, 이슈 계기별 다매체 활용 국민 참여 이벤트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2023 업무편람'에 새롭게 반영된 사항의 교육·안내를 위해 개최하는 권역별 설명회 참여(8~9월)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협조(전 공공기관)
 -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이행 및 조치 현황, 제한·금지 의무 관리 현황, 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현황 등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협조(9월~)
- 이해충돌방지법 법정 의무 교육 이행(전 공공기관)
 - 소속 공직자들이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권익위에 지원 요청
-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법 위반행위 신고 조사에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조사기관* 이첩·송부 건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통보 등 협조(해당 공공기관)
 -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법 제18조)
- 공직자의 수범성 제고를 위한 자체 점검 등 이행 노력 전개(전 공공기관)
 - 부패 취약 시기 또는 정기적으로 소속 공직자의 의무 이행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신고 빈발분야 재발 방지 노력 등 전개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전 공공기관)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팀 (전화) 044-200-7674, 7678, 7679, 7681

(메일) tethr17@korea.kr, csy1009@korea.kr, nars28@korea.kr, ktm0428@korea.kr

참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요 사례

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와 신청사 증축 공사계약을 체결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단체장의 부모님 주택 건축 공사를 위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개인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신고한 사례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2.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부처 소속 공직자 C가 직무관련자인 법무법인·협회 등의 대표로 재취업한 ○○부처 퇴직 공직자와 골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3. 가족 채용 제한

-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개경쟁 채용절차 없이 감독기관인 ◇◇부처 고위공직자의 자녀를 채용(자녀가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부처가 기관 구매계약 담당 공무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차량수리업체와 관용차량 정비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5.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군과 ◇◇개발공사가 ○○군 지역 내 토지개발 사업계획을 공개하기 전에 해당 계획을 알게 된 ◇◇개발공사 직원이 자신의 가족으로 하여금 개발예정지역 내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경우
→ 임직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제3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부과 대상

2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 ◇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 기준 정비를 통한 규범력 제고
- ◇ 실태점검 및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로 자율적 법 준수 노력 촉진

□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 기준 정비

- (법령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
 - 국민 생활 속 실천규범으로 내재화하고, 청탁금지법령·제도 운영 중 우회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 발굴·개선 추진(9월~)

【청탁금지법령 개정 현황 및 추가 법률 개정 검토(안)】

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3.8.30.시행)

- ①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 ※ 가액 상향(10 → 15만원, 설·추석 명절기간 20 → 30만원)
- ② '선물' 범위에 상품권(물품 및 용역상품권) 포함
 - ※ 금액상품권은 제외(백화점 상품권 등)

2. 추가 법률 개정 검토(안)

- ①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공공기관의 인사' 명시
 - ※ 송재 호의원 발의안('21.9.) 정무위 계류 중
- ② 청탁금지제도 운영 관련 자료제출 요구 근거 명확화

- (해석 기준) 유권해석 질의에 신속 대응, 유권해석DB*, 판례 등 유형·분야별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통한 각급 기관의 사안별 대응력 제고

* 공공기관 유권해석 요청,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 질의·답변 등 약 2만 6천건

- 공공기관의 신고사건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법원 과태료 결정례 등 자료집을 게시(7월)하여 기관별 엄정한 법 집행 추진지원(하반기)

□ 각급 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실태점검 실시

- **(후속조치)** '22년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기관 대상 시정조치 통보*(6월), 이행여부 확인(~9월) 및 미이행기관 청렴도 평가반영(감점)(10~12월)
 - * 부적절 처리 사례는 공문으로 각급 감독기관에 일괄 통보 완료(6.28. 시행)
- **(정기점검)** '23년 말 기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관련 각급 기관별 법 위반신고 접수·처리현황 등 서면점검 자료 요청 예정(12월~'24.1월)
- **(수시점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언론보도·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모니터링 하여, 신고처리 부적절 사례 등에 대한 상시 점검·개선 요구(수시)
 -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 사례가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부적절 사건 처리 경위 등 현지점검 실시 후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실효성 담보

□ 법 준수 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 **(공직자등)** 기관 유형별 빈발 위반행위, 수사의뢰·과태료 부과 요청 절차 등 세부 신고처리 방법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
 - ※ (공공기관) 하반기 청탁금지제도 권역별 설명회(8~9월)
 - (언론)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기자협회와 협업하여 언론인 청탁금지법 교육과정 확대 및 청탁방지담당관 맞춤형 교육 실시(수시)
- **(일반국민)** 명절 등 주요 계기별 청탁금지법상 허용범위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해소
 - ※ 카드뉴스,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 등 활용한 다각적 홍보 추진

홍보 내용(예시)	추진시기
•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유의사항	9월
• 부정청탁, 금품등수수, 외부강의 관련 주요 판례 카드뉴스	수시

[협조 요청 사항]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이행 협조(8~9월, 해당 공공기관)
 - 부적절 처리 통보(6.28.) 사례 대상, 각급 감독기관의 시정요구 및 해당기관의 시정조치 이행완료 후 결과 및 증빙자료 공문 회신
-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 교육·홍보 적극 참여 요청(전 공공기관)
 - (교육) 하반기 청탁금지제도 권역별 설명회 참석 협조(8~9월)
 - (홍보) 설·추석 등 특정 시기와 연계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자료(카드뉴스, 홈페이지 배너 등) 적극 활용 협조(수시)
-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 등 홈페이지 자료 활용 요청(전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 교육자료 게시 등을 수시 확인하여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업무 역량 강화(최신 유권해석 기준 등 지속 게시 예정)

참고 : 청탁금지법 위반 주요 사례

1. 부정청탁 금지 위반 사례

- 중앙행정기관 계장 A는 관내 업소 단속 담당자에게 **B업소에 대한 단속을 차후에 하도록 청탁**
→ 과태료 200만원 부과
- 공직유관단체 팀장 A는 계약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제안서 평가에서 **특정 제품을 선택하라고 계약 업무담당 직원들에게 청탁**
→ 과태료 200만원 부과
- 대학교 교수 A는 같은 학과 교수 6명에게 **특정 대학원생의** 출석 및 성적과 관련하여 **성적 편의 관련 청탁**
→ 벌금 300만원 부과
- 대학교 어학원 직원 A는 어학원장 B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사촌 동생을 어학원 자체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청탁**
→ 과태료 100만원 부과

2.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사례

- 중앙행정기관 직원 A는 직무관련자 B로부터 **골프비용 등 약 45만 8천원의 향응을 수수**
→ 과태료 160만원 부과
- 지방자치단체 직원 A는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OO건립공사의 현장소장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식사를 대접받았으며, 현장소장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등산화를 제공받는 등 약 34만 9천원의 금품을 수수**
→ 과태료 70만원 부과
- 지방자치단체 직원 A는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2박 3일간 골프장에서 골프게임비, 식비, 콘도 이용료가 포함된 패키지 골프여행 비용** 약 41만 9천원을 수수
→ 과태료 200만원 부과
- 공직유관단체 직원 A는 행사개최 **용역계약 업체 대표 B로부터 자문위원 식사권 제공 명목으로 호텔 식사권 20장(총 244만 8천원)**을 수수
→ 벌금 200만원 부과

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내실화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 유도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행위기준 재정립

□ 기관별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 (행위기준 개선) 공공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업무담당자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행동강령 제도 운영 보완사항 발굴·개선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개정·발간(12월)
 - ※ 관련법령 개정사항, 위반사례, 질의회신례 등을 반영해 쏘 공공기관 배포
 -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행동강령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해석 기준, 위반사례 등을 즉각 전파
 - ※ (예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담 수령이 이슈화될 경우, 예산 목적외 사용 관련 행동강령 해석기준·위반사례를 보도자료·SNS 등을 통해 전파
- (행동강령 제정 지원) '23년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52개) 대상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지원을 통해 행동강령 이행기반 조속 구축
 - ※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 설명회 등을 통해 행동강령 제도 운영 역량 강화

□ 부패 취약 분야시기 행동강령 이행점검 강화

-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수시점검)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 특혜소지 등 국민 관심이 큰 행동강령 위반사건 신속·중점·직접조사
 -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관계자 징계 등 조치 요구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공공기관 대상 관계법령 준수사항 전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현안 대응 사례】

○○시 지자체장 경조사 통지 제한 위반('23.3.), ◇◇시 지자체장·지방의원 수영장 이용 특혜 의혹('23.4.) 언론보도·이슈화

즉시 조사해 위반사실 확인·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전체 공공기관 대상 경조사 통지('23.4.) 및 문화체육·휴양시설 이용('23.5.) 관련 행동강령 준수사항 안내·공유

○ **(취약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저조한 기관, 그간 행동강령 실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중심으로 예방적 실태 점검**

-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체 공공기관에 비해 낮게 나타난 국공립대학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집중 실태점검(4월~10월)**

※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공립대학 유형이 가장 낮은 점수로 취약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전체 평균 점수 : 81.2점, 국공립대학 유형 : 75.2점)

【국공립대학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개요】

- **(점검 대상)** 68개 국공립대학(별도법인 포함) 전체
- **(점검 내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외부강의 미신고, 학내 '갑질', 연구비 집행비리 등 행동강령 위반사항 집중 점검
- **(추진 경과)** 점검 계획 수립(4월), 서면·현장점검(~10월) 및 결과발표(11월)

- **(신규기관) '19년도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의 운영 실태 점검 (8~10월)**을 통해 신규기관의 제도 이해력 제고 및 부패 발생 가능성 예방

※ (대상)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운영(3년경과)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총 41개 기관

※ (내용) 행동강령 제도운영실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감독기관에 대한 관행적 선물 등

○ **(취약시기) 추석 명절 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를 전후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 집중 점검(9월)**

※ 언론 등을 통한 행동강령 위반 이슈 발생 기관, 행동강령위반 신고 빈발 기관,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 부패행위 발생 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 제출(전 공공기관)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이 완료될 경우 ① 자체 행동강령 개정 전문, ② 신·구 조문대비표를 공문으로 송부

※ 국민권익위에서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은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에 시정·권고사항 신속히 반영

○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이행점검 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해당 공공기관)

-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기관 송부시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실시 후 권익위로 조사결과 통보 등 협조
- 이행점검 시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 관계기관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제도개선 검토 등 협조

○ 기관별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 전개(전 공공기관)

- 각급 기관별 소속 공직자 대상 갑질 금지,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 적극 실시

※ 국민권익위에서 공문 안내한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준수사항 안내’(23.4.), ‘문화 체육·휴양시설 특혜 이용 관련 행동강령 준수사항 안내’(23.5.) 등 적극 활용

-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자율적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활동 적극 전개

※ 필요시 점검실적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점검실적 확인 예정

○ 행동강령 위반 신고 빈발분야 재발 방지 노력 강구(전 공공기관)

- 특히, 출장여비 신청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조례·사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직자 교육 및 자체 점검 실시

※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징계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 및 불법적 비위 관행 원천 차단

참고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주요 사례

1.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 행동강령 위반 사례

- ○○군 비서실장이 ◇◇공장 대표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 선물세트 수개를 수수하고 과장급 공무원 및 비서실 직원 등에게 분배하다가 적발
- ○○시 민간체육단체가 단체장을 수신자로 하여 담당부서에 택배 배달한 시가 29만원 상당 선물세트를 비서실 직원이 담당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수수하다가 적발
- ○○기관 위생과 공무원이 점검대상 건강식품제조업체로부터 41만 원 상당 스팸 선물세트 수개를 수수하다가 적발

⇒ 해당 공공기관에 행동강령 위반통보(징계 등 조치)

2.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사례

- 공직자가 출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출장비를 지급하거나 관용차량 사용 시 출장비를 감액하지 않고 부정 수령
 - * 신고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의 출장내역, 출장비 지급내역, 관용차량 사용내역 등을 대조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
- ○○기관 A팀장은 본인이 피복비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상품권으로 피복비를 지급받고 팀원들에게도 개인 의류를 사도록 지시

⇒ 해당 공공기관에 행동강령 위반통보(징계 등 조치)

3. 부당한 사적노무 요구 또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위반 사례

- ○○공단 □□사무소 소장이 소속직원에게 개인적으로 구매한 세탁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소속직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설치
- ○○군 △△팀장이 후생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단체장의 점심행사 준비, 온라인 강의 대리수강 등을 요구

⇒ 해당 공공기관에 행동강령 위반통보(징계 등 조치)

1 부패방지 제도개선 및 이행관리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지속적인 이행관리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효과 확산 기여

□ 잔존하는 불공정·특권 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공정사회 기반 구축)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기득권 카르텔, 특혜 제공 등 불합리한 관행과 유착을 차단

※ (예시) 국가자격시험의 과도한 공무원 면제 특례(자동부여, 과목면제 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3. 하반기)

- (부조리 차단) 경제회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공재정 지원·집행의 누수 방지

※ (예시)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운영 방안 제도개선 권고('23.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23. 하반기)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이행점검)

- (정기 이행점검)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주기적 이행점검 대비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통보('23.3월) 관련, 각급 기관은 과제별 이행실적 확인 후 점검결과 제출

※ 제출사항 : 이행완료 여부, 미이행 과제별 지연 사유 및 추진계획 등

- 이행점검 결과는 증빙자료 등의 확인을 거쳐 이행완료 여부 검토 후 국회, 국무회의 등에 보고 추진

※ 기관별 제도개선(부패방지 분야) 이행실적은 종합청렴도 평가에 지표로 반영

- **(맞춤형 관리)** 이행 저조기관에 대한 **맞춤형 이행관리**(수시)
 - 미이행 과제의 조속한 이행방안 협의 및 대체방안 논의를 위해 찾아가는 **기관별 컨설팅 실시**(’23.3월 이행현황 통보 시 신청안내)
 - 이행률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확인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현지 이행실태 점검 실시**(11월)
 - ※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감독기관과 협업 점검 실시
 -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사례 등은 **언론 공표**
- **(장기 미이행 과제)** 권고 후 조치기한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이행률이 저조한 과제에 대한 **전수 점검 실시**(계속)
 - 점검결과, 권고 취지가 현재도 유효하고 국민 입장에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재권고 검토**
 - 환경 및 정책변화 등으로 시의성 떨어지는 과제는 **관리종결 검토**

[협조 요청 사항]

-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조회 시 기한 내 제출(**전 공공기관**)
- 기관별 권고 이행현황 통보 시 점검결과 필히 제출(**전 공공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 우수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추천

2 법령·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정과제·민생 법령과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예방적 부패방지 체계 확립

□ 중점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관리 강화

- (국정과제 이행 지원) 국정과제 관련 제·개정 법령 평가 집중 관리로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부패 발생 위험성 차단
 - ※ 평가대상 법령 증가로 인한 평가지연 방지 및 평가 충실성 제고 등을 위해 국정과제 법령 등 중요 법령 평가대상·처리기간 상시 관리
- (민생법령 집중 관리) 안전·건강·규제혁신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법령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집중 발굴 및 관리

□ 자치법규 속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집중 개선

- (대상) 하반기에 61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 전수 평가
 - 조례·규칙·훈령·예규 외에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경우 내부지침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
 - ※ '24년까지 단계 평가 예정('22년 : 79개 지자체, '23년 : 78개 지자체(상반기 17개 광역자치단체, 하반기 61개 자치구), '24년 : 86개 지자체)
- (방식) 그간 개선권고가 많았던 지방의회, 보조금, 위원회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부패이슈·부패유발 규제 등 추가 발굴·평가
 - ※ '23년 평가대상 지자체에 '22년 개선사례를 공유('23.2)해 자체점검 실시

【2022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주요 사례('22.12., 79개 기초자치단체)】

- (토착비리·부패 예방)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여비·업추비 기준 정비 및 부정수령 제재 등), 보조금 및 금고 협력사업비 등 재정누수 차단, 지역 축제·행사 안전 및 사업 공정성·책임성 제고 등
- (부패성 규제 제거) 공영주차장 감면 확대 등 행정편의 규제 완화, 도시숲 조성·관리 위탁사업자 참여 확대 등 불공정한 진입장벽 제거 등

- **(개선권고)**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한 평가 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해당 지자체에 개선 권고
- **(이행점검)** 개선권고 대상기관 중 이행 조치기한이 경과한 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 여부 확인·점검

※ 조치기한 : (79개 기초) '23.6월, (17개 광역) '24.3월

【17개 광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23.7.)】

- 대상 : 17개 광역 자치단체·지방의회의 자치법규(조례·규칙·예규 등) 18,030개 전수
- 결과 : 23개 개선과제, 436건 개선권고
- 주요 내용 :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사도립 예술단 채용·운영 공정성 제고,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등

[협조 요청 사항]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기관 의견조회 협조(**61개 자치구, 11월경**)
 - 국민권익위 개선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기한 내 회신
-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적극 협조
 - 법령 제·개정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이행(**중앙행정기관**)
 -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추진계획에 따라 개정 추진(**79개 기초, 17개 광역**)
 - 이행 조치기한 경과 후 이행실적 제출(**17개 광역 '24.4월**)

- ◇ 차질 없는 평가 이행과 공정한 결과 도출로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 지원, 도입 2년차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현장에 안착

□ 체계적으로 보완된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시행

- (체계) 부패인식과 개선노력, 실제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개의 영역으로 구성
- 청렴체감도(60%) + 청렴노력도(40%) - 부패실태 평가(최대 10%)

청렴체감도 (60%)	√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약 19만명)·내부직원(약 8만명)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 ('23년) 외부·내부 각 9개 항목
청렴노력도 (40%)	√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 ('23년) '추진체계-실적' 2개 영역의 총 12개 지표, 기관유형별 맞춤형 평가체계 적용, 채용·공공재정 등 국정과제 관련 지표 강화
부패실태 감점 (최대 10%)	√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자체적발 제외, 포상감경 불문경고 포함)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대상) 16개 유형, 629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46), 지방자치단체(243), 교육청(17), 공기업(32) 및 준정부기관(55)은 매년 전수, '23년 지방의회(광역·기초 시, 92), 연구원(21)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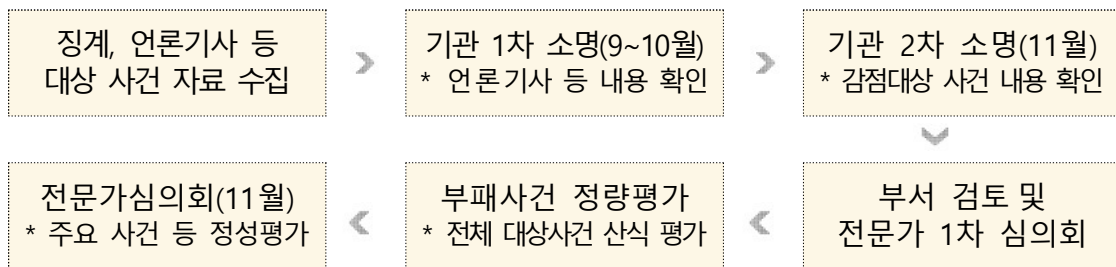
합계 (개)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지방의회	
			광역	기초				Ⅰ (공기업)	Ⅱ (준정부)	Ⅲ (중점)	Ⅳ (지방 공기업)	Ⅴ (연구원)			광역	기초 (시)
	Ⅰ (장관급)	Ⅱ (차관급)		Ⅰ (시)	Ⅱ (군)	Ⅲ (구)										
629	25	21	17	75	82	69	17	32	55	45	40	21	16	22	17	75

* (공통모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특화모형)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지방의회

□ 하반기 평가 차질 없이 이행, 연내 발표로 반부패 노력 지원

○ (평가) 3개 영역별 일정에 따라 평가 진행

- (체감도) 외부 민원인, 내부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8월~11월)
 - ※ 전화·온라인(이메일, 문자), '23년 카카오톡 앱을 통한 설문방식 첫 도입
- (노력도) 기관별 평가지표 이행실적(~9월) 취합 및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정량·정성평가 결과 등 반영(~12월)
 - ※ 정량지표 1차 평가 결과에 대해서 기관 이의신청·검토 실시(10월~11월)
- (부패실태) 기관 징계현황, 기소·판결 등 부패사건 언론보도를 종합 검토하여 정량·정성평가(전문가) 실시(~11월)



○ (현지점검) 기관의 신뢰도 저해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평가 신뢰성·공정성 확보(9월~10월)

- ※ 설문조사 명부, 실적보고서 등 기관 제출자료, 호의적 응답 유도 및 표본 관리 행위,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집중 점검

○ (발표)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대국민 공개, 기관에는 세부 평가결과를 별도 제공(12월)

- 종합청렴도 결과는 대국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하고, 필요시 국무회의 보고
 - ※ 평가 대상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기관별 평가결과를 공개
- 우수시책 사례를 발굴해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반부패 정책 국외연수 등 기회 제공

[협조 요청 사항]

- 자료 제출·보완, 소명, 이의신청 등 평가일정 반드시 준수·이행
(~ 11월, 평가 대상기관)
 - 설문조사 명부 보완(~9월), 청렴노력도 실적 제출(10월초) 및 1차 정량평가 이의신청(10월 예정), 부패사건 소명(~11월), 담당자 연락처 업데이트(12월) 등
-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11월, 평가 대상기관)
 - 호의적 응답 유도, 표본관리 행위, 실적 조작, 자료제출 비협조 등
- 하반기 현지점검 협조(9월 ~ 10월, 현지점검 대상기관)
 - 자료 등 준비사항 원활히 협조(점검 대상기관 및 일정은 별도 안내·협의)
- 기관별 평가결과 공개 등 후속조치 이행(12월, 평가 대상기관)
 - 발표 14일 이내에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12월~), 공개실적은 안내에 따라 별도 제출('24년)

-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등 효과적인 교육지원을 법정 청렴교육 이행을 제고 및 청렴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강화

□ 공직자 부패방지 의무교육 관리 강화

- (부진기관 사후관리) '22년 부패방지교육 실적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 이행계획서* 징구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부패방지교육 실적 부진기관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권역별로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11월)
 - * 교육환경 분석, 교육실적 부진 사유 및 개선 계획 등 포함
 - ※ '22년 부패방지교육 실적 점검 결과 발표(9월 예정)
- (현장점검 및 컨설팅)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회, 국공립 대학 및 관리자 특별교육 미참석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교육실적 점검 및 컨설팅 추진(~12월)
- (교육여건 열악기관 지원) 집합교육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설(~12월) 및 기관 자체교육 운영 지원**
 - * 구루미, 줌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청렴교육 실시
 - **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등 안내, 자체 교육용 청렴교육 콘텐츠 제공 등

□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 및 강사·콘텐츠 지원(청렴연수원)

- (교육과정) 고위공직자(기관장 포함)·승진자·신규자 대상 교육과정과 일반과정 집합교육 및 이러닝 과정 등 맞춤형 과정 운영
 - ※ 고위공직자, 승진자, 신규자는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상 대면교육 의무자

- (고위공직자) 반부패 법령의 이해 및 실천, 명사 특강 등 고위직 맞춤형으로 설계된 ‘청렴리더십 과정’ 운영(9~12월, 매월 2회)
 - ※ 중앙부처 4급 이상 공직자 대상 집합교육 운영(9.14. 14:00~16:00, 세종시)
 - (승진·신규자)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강의, 청렴 소양강의, 공연형 교육 등으로 바람직한 청렴 가치관 확립(9~12월, 매월 1회)
 - (일반과정)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계약·인사), 청렴 감수성 향상 과정,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과정 등 공직자 청렴 의식 제고
 - ※ 부패대응능력 향상(계약, 10.12), 감수성 향상(10.23~10.25) 이해충돌방지법(매월1회)
 - ※ 청렴교육 외에도 고충민원 1회(11.3), 권익개선 1회(11.8~11.9), 행정심판 2회(10.31, 12.15) 관련 교육과정 운영
 - (이러닝)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akti.nhi.go.kr)’를 통해 총 27개 과정 운영(수어과정 포함)
- (강사 지원) 기관 자체 청렴교육 지원을 위한 청렴교육 전문·소양 강사 및 내부강사* 양성
- * 기관 청렴·감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가능(해당 연도에 한정)
- (콘텐츠 확산) 공직자들이 쉽게 청렴 및 반부패 법령을 학습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공유
- ※ ‘반부패 법령 솜품 영상물’, ‘청렴 시트콤’, ‘청렴 브이로그’ 개발 중(12월 완료)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활용하거나, 콘텐츠 다운로드가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 청렴연수원에 공문을 통해 공유 신청할 경우 내려받기 가능 / 공유 가능 콘텐츠 목록은 < 참고자료 2 > 참조

[협조 요청 사항]

-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실시 및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은 별도 공문 송부 완료('23. 3월)
 - ※ 참고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각각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부패방지교육 실적 부진기관은 부패방지교육 이행계획서 제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참석 협조(해당 공공기관)
 - ※ 부패방지교육 실적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 이행계획서를 제출 요청(9월)할 예정이며 관리자 특별교육은 11월 경 실시할 예정임
- 부패방지교육 실적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시 협조(해당 공공기관)
- 소규모 기관 등 대상 맞춤형 온라인 교육 참석 요청(12월, 해당 기관)
- 고위공직자(기관장 포함), 승진자, 신규자 등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 청렴연수원 교육 파견 등 협조 요청(전 공공기관)
- 4급 이상 공직자 대상 집합교육(9.14, 세종) 적극 참여 요청(중앙행정기관)
-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강사 적극 활용 요청(전 공공기관)
 - 청렴교육 전문·소양강사* 또는 '내부강사 양성과정'에 합격한 기관 감사부서 직원 활용
 -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전문강사 검색 및 강의 요청 가능
-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연수원 콘텐츠 활용 요청(전 공공기관)
-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를 보유한 기관은 이러닝 과정 운영 시 가급적 해당 시스템 이용(전 공공기관)
 - ※ 자체 나라배움터 : 공동활용을 통해 자체 나라배움터에 개설
 - ※ 나라배움터 외 : 이러닝 과정을 공유받아 탑재 및 운영

- ◇ **국민 관점에서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정비하여 신고자 보호 체감도를 제고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

□ **보호·지원 제도 일원화를 통한 신고자 보호·지원 차이 해소**

- **(법률 개정) 신고 분야별 신고자 보호·지원 수준 차이 해소를 위해 반부패 5개 법률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정비방안 마련**

【반부패 5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개정목적)** 반부패 법률간 제·개정 입법 시차로 인해 개별법마다 신고자 보호·지원 수준이 상이
- **(대상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 **(주요내용)**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는 각각의 법에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개별로 규정하되, 그 수준은 통일하고 그 외 법령은 이를 준용
- **(향후계획)** 법률 일원화 방안 마련(2월) 및 법제처 법제조정지원(3~6월) 완료에 따라 입법 추진

- **(시행령 개정) 신고 근거 법률에 따른 보상금 수준 형평성 문제 해소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자등에 대한 신고 포상 확대**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부패행위신고와 같이 4~30%로 상향
-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상한 5억에 맞춰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신고 및 공익·부정청구등 신고 포상금 2억에서 5억으로 상향

※ 분과위원회(8.7.), 전원위원회(8.21.), 입법예고(8.25.~10.4) 및 사전영향평가(진행 중)

구 분	부패행위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구등신고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포상금 상한	5억	2억	2억	5억
보상금 지급비율	4~30%	4~20%	30%	부패·공익신고 4~30% 부정청구등신고 30%

□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기반 강화

- (보호대상 확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하고,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471→490개)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 마약거래방지법, 지방보조금법, 기부금품법 등 대상법률로 규정

※ 입법예고(3.13.~4.24.), 차관회의(8.3.), 국무회의(8.8.), 정부안 제출(8.10.)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효과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주요 보호·지원 사례 등을 웹툰,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자료로 제작하여 위원회 SNS 게재 및 배포(9월 예정)

- 공익신고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개최(12월 예정)

- 각급기관이 처리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공익신고 사건에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위원회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배포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2022년)」 [서식 7] 참고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 보상금은 위원회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고유형을 확인하고 안내

[협조 요청 사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한 신고 포상금 확대 및 보상금 지급기준 등 개정 시 홍보 협조(12월 예정, 수시)(해당 공공기관)
 - 신고자들에게 개정된 포상금, 보상금 제도가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현재 법제처 심사 단계)
- 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금의 적기 납부(해당 공공기관)
 - ※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 등에 따라 징수 예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3항)
- 신고자 보호 유공자 적극 추천 요청(11월 예정)(해당 공공기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한 기관·단체 및 개인 포상 대상자 추천 협조
 - ※ 공익신고의 날(129) 행사 시 신고자 보호 유공 기관·단체·개인(장관급 표창) 포상 예정
- 각급기관이 처리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공익신고 사건에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위원회 보상 제도 운영 안내문 배포(수시)(해당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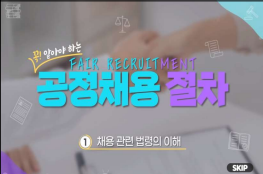
참 고 자 료

1

2022년 ~2023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대상 현황

연번	2022년	연번	2023년	
	총 79개 기관		총 78개 기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1	강원특별자치도	
2	서울특별시 강동구	2	경기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3	경상남도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	경상북도	
5	대구광역시 달서구	5	광주광역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6	대구광역시	
7	인천광역시 강화군	7	대전광역시	
8	인천광역시 서구	8	부산광역시	
9	울산광역시 북구	9	서울특별시	
10	울산광역시 동구	10	세종특별자치시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11	울산광역시	
12	강원도 고성군	12	인천광역시	
13	강원도 동해시	13	전라남도	
14	강원도 양구군	14	전라북도	
15	강원도 인제군	15	제주특별자치도	
16	강원도 정선군	16	충청남도	
17	강원도 철원군	17	충청북도	
18	강원도 평창군		자치구	
19	강원도 홍천군	1	광주광역시	광산구
20	강원도 횡성군	2	광주광역시	남구
21	강원도 춘천시	3	광주광역시	동구
22	강원도 화천군	4	광주광역시	북구
23	강원도 강릉시	5	광주광역시	서구
24	경기도 과천시	6	대구광역시	남구
25	경기도 김포시	7	대구광역시	동구
26	경기도 이천시	8	대구광역시	북구
27	경기도 파주시	9	대구광역시	서구
28	경기도 포천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29	경기도 광명시	11	대구광역시	중구
30	경기도 안성시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31	경기도 여주시	13	대전광역시	동구
32	경기도 수원시	14	대전광역시	서구
33	경기도 안산시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34	경기도 용인시	16	대전광역시	중구
35	경기도 의정부시	17	부산광역시	강서구
36	경기도 화성시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37	경상남도 의령군	19	부산광역시	남구
38	경상남도 함양군	20	부산광역시	동구

연번	2022년	연번	2023년	
39	경상남도 합천군	21	부산광역시	동래구
40	경상남도 창원시	22	부산광역시	북구
41	경상남도 거제시	23	부산광역시	사상구
42	경상남도 고성군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43	경상북도 경주시	25	부산광역시	서구
44	경상북도 군위군	26	부산광역시	수영구
45	경상북도 봉화군	27	부산광역시	연제구
46	경상북도 영덕군	28	부산광역시	영도구
47	경상북도 영주시	29	부산광역시	중구
48	경상북도 울릉군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9	경상북도 청도군	31	서울특별시	강북구
50	경상북도 안동시	32	서울특별시	강서구
51	경상북도 울진군	33	서울특별시	관악구
52	전라남도 고흥군	34	서울특별시	광진구
53	전라남도 곡성군	35	서울특별시	구로구
54	전라남도 나주시	36	서울특별시	금천구
55	전라남도 담양군	37	서울특별시	노원구
56	전라남도 순천시	3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7	전라남도 신안군	39	서울특별시	동작구
58	전라남도 완도군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59	전라남도 장성군	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60	전라남도 진도군	42	서울특별시	서초구
61	전라남도 무안군	43	서울특별시	성동구
62	전라남도 화순군	44	서울특별시	성북구
63	전라북도 부안군	45	서울특별시	송파구
64	전라북도 고창군	46	서울특별시	양천구
65	전라북도 순창군	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6	전라북도 장수군	48	서울특별시	용산구
67	전라북도 정읍시	49	서울특별시	은평구
68	전라북도 전주시	50	서울특별시	종로구
69	충청남도 당진시	51	서울특별시	중구
70	충청남도 보령시	52	서울특별시	중랑구
71	충청남도 서천군	53	울산광역시	남구
72	충청남도 태안군	54	울산광역시	중구
73	충청남도 공주시	55	인천광역시	계양구
74	충청남도 홍성군	56	인천광역시	남동구
75	충청북도 단양군	57	인천광역시	동구
76	충청북도 괴산군	5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77	충청북도 충주시	59	인천광역시	부평구
78	충청북도 증평군	60	인천광역시	연수구
79	충청북도 청주시	61	인천광역시	중구

연번	주요 내용	개발
1	 【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 절차】 - 이러닝 - 채용 관련 법령 및 채용 절차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여 공정채용 문화 확산(4차시)	'23년
2	 【청렴윤리경영의 이해】 - 이러닝 - 청렴윤리경영의 개념 및 국내외 동향 등 이론과 관련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설명(3차시)	'23년
3	 【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 이러닝 - 경찰·소방·교정공무원, 군인 등 현장공직자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	'22년
4	 【이해충돌방지법 탐구생활】 - 영상물 -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인 10개 행위 기준을 에피소드를 통해 쉽게 설명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	'22년
5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 ①, ②】 - 영상물 - 이름도 비슷하고 인접한 두 국가(파라과이, 우루과이)의 청렴도가 크게 차이 나는 원인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 설명	'22년
6	 【부패로 큰코다친 나라들, 뇌물과 부패방지법】 - 영상물 - 나라를 뒤흔든 세계 각국의 희대의 부패사건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해외의 반부패 입법 사례 소개	'22년
7	 【청렴 북 콘서트】 - 영상물 - 문학, 심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청렴 관련 도서의 내용을 소개하여 청렴을 쉽게 이해(총 5편)	'21년
8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 1, 2】 - 영상물 - 인문학을 소재로 청렴을 설명하여 청렴의 가치와 반부패 제도를 쉽게 이해(각 시즌별 6편)	'19년 '20년
9	 【청사진 1~5】 - 영상물 - 심리학, 공익신고, 부패와 재난 등 국민 생활과 밀착된 주제를 이용하여 청렴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 마련	'19년

월	과정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
9월	청렴윤리경영 고위직 과정(중간관리자)	7기	40명	9.4.(월)~9.5.(화)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	3기	40명	9.6.(수)~9.7.(목)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온라인)	8기	500명	9.6.(수)
	청렴윤리경영 고위직 과정(기관장·임원)	8기	40명	9.7.(목)
	승진자 과정(공무원)	7기	70명	9.8.(금)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법령·정책)	3기	50명	9.11.(월)~9.14.(목)
	고위직 과정	11기	40명	9.14.(목)
	신규자 과정(공무원)	8기	40명	9.18.(월)~9.19.(화)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9기	40명	9.19.(화)~9.22.(금)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5기	250명	9.12.(화)~9.14.(목)
	고위직 과정	12기	40명	9.21.(목)
	2030세대 과정	4기	40명	9.26.(화)
10월	승진자 과정(공직유관단체)	8기	70명	10.12.(목)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온라인)	9기	500명	10.11.(수)
	부패대응능력 향상 과정(계약)	4기	40명	10.12.(목)
	고위직 과정	13기	40명	10.17.(화)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6기	250명	10.17.(화)~10.19.(목)
	신규자 과정(공직유관단체)	9기	40명	10.12.(수)~10.13.(금)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	5기	70명	10.20.(금)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10기	40명	10.24.(화)~10.27.(금)
	청렴감성지수 향상 과정	4기	40명	10.23.(월)~10.25.(수)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2기	80명	10.31.(화)
11월	고위직 과정	14기	40명	11.1.(수)
	고충민원 역량강화 과정	4기	80명	11.3.(금)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역량 향상과정	3기	30명	11.6.(월)~11.7.(화)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	4기	40명	11.8.(수)~11.9.(목)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온라인)	10기	500명	11.8.(수)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11기	40명	11.14.(화)~11.17.(금)
	신규자 과정(공무원)	10기	40명	11.21.(화)~11.22.(수)
	고위직 과정	15기	40명	11.23.(목)
	승진자 과정(공무원)	9기	70명	11.21.(화)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	6기	70명	11.30.(목)
12월	승진자 과정(공직유관단체)	10기	70명	12.7.(목)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12기	40명	12.5.(화)~12.8.(금)
	고위직 과정(온라인)	16기	150명	12.5.(화)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4기	80명	12.15.(금)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개념

임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중점과제 1】 전관특혜 등 부패 카르텔 혁파			
①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8.10.~10.8.) 홍보 협조	~10월	전 공공기관
②	카르텔 부패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협조 및 기 권고 과제 이행 철저	수시	전 공공기관
③	분야별 카르텔 부패 자체 감사·점검	수시	전 공공기관
④	공직자 행위규범 제도 운영 실태점검 및 위반사건 조사 협조, 후속조치 이행 철저	수시	전 공공기관
【중점과제 2】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근절 등 관리 강화			
①	'23년 상반기 처분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관리 점검	하반기	전 공공기관
②	후속점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	수시	해당 기관
③	국조실 주관 보조금 감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이행 실태 월별 점검	10월~	해당 기관
④	기관별 자체점검	~9월	전 공공기관
⑤	'정부지원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적극 홍보	7~10월	전 공공기관
⑥	취약분야 합동점검	연중	해당 기관
⑦	권익위외 타기관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기준 대상자를 권익위에 적극 추천	연중	전 공공기관
⑧	부정수급 근절 공직자 등을 권익위 부패방지유공 추천	하반기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중점과제 3】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및 공정채용 문화 정착			
①	2023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2~10월	전 공공기관
②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적용 및 적극 이행 협조 * 제도개선권고 이행기간('23.9.30)	9월	전 공공기관
③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시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 등 적극 협조	수시	해당 기관
1. 생활 속 규범으로 반부패 행위규범 내재화			
【1】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시행			
①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참석	8~9월	전 공공기관
②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조사 협조	9월~	전 공공기관
③	이해충돌방지법 의무 교육 이행	연중	전 공공기관
④	법 위반행위 신고 조사 및 이첩·송부 건 처리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⑤	자체 점검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 전개	연중	전 공공기관
⑥	제도운영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등 의견 공유	연중	전 공공기관
【2】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이행 협조	8~9월	해당 기관
②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참석	8~9월	전 공공기관
③	법 바로 알리기 홍보자료 활용	수시	전 공공기관
④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홈페이지 활용 요청	수시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내실화			
①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 제출	제·개정 완료시	전 공공기관
②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실태점검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소속 공직자 대상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 적극 실시 ※ 국민권익위 안내 사항 적극 활용(경조사 관련 준수사항 안내, '23.4./문화·체육·휴양시설 특혜 이용 관련 준수사항 안내, '23.5.)	연중	전 공공기관
④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연중	전 공공기관
2.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1] 부패방지 제도개선 및 이행관리			
①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조회 시 기한 내 제출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 적극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2] 법령·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기관 의견조회 협조	11월 예정	61개 자치구
②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적극 협조	수시	해당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촉진			
①	설문조사 명부, 부패사건 징계자료 등 보완	~9월	평가 대상기관
②	하반기 현지점검 협조	9~10월	점검 대상기관
③	청렴노력도 실적 제출	10월초	평가 대상기관
④	청렴노력도 정량지표 1차 평가 이의신청	10월 예정	평가 대상기관
⑤	부패사건, 언론보도 사항 등 확인·소명	~11월	평가 대상기관
⑥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업데이트	12월	평가 대상기관
⑦	기관별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12월	평가 대상기관
4.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공직사회 청렴역량 강화			
[1] 공직자 부패방지 의무교육 관리 강화			
①	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참여 협조 * (규범별)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대상별) 고위직·승진자·신규자 등 대면교육 의무자	연중	전 공공기관
②	부패방지교육 이행계획서 제출 협조	~9월	해당기관
③	부패방지교육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참석 협조	11월 예정	해당기관
④	부패방지교육 실적점검 및 컨설팅 협조	~12월	해당기관
⑤	소규모 기관 등 대상 맞춤형 온라인 교육 참석 협조	~12월	해당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2]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 및 지원			
①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 청렴연수원 교육 파견 등 협조	~12월	전 공공기관
②	4급 이상 공직자 대상 집합교육 적극 참여 요청	9.14.	중앙행정기관
③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강사 적극 활용	~12월	전 공공기관
④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연수원 콘텐츠 활용 협조	~12월	전 공공기관
⑤	자체 LMS 보유 기관은 청렴연수원으로부터 이러닝 과정을 공유받아 자체적인 이러닝 운영 요청	~12월	전 공공기관
5. 촘촘하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①	신고 포상금 확대 및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시 홍보	12월 예정	해당 기관
②	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금 적기 납부	수시	해당 기관
③	신고자 보호 유공자 적극 추천	11월 예정	해당 기관
④	기관이 자체 처리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공익 신고 건에 대해서도 보상 안내문 배포	수시	해당 기관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정책 총괄과	박중하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 이행 실적 점검 및 관리	044)200-7616	044)200-7939
청렴정책 총괄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팀)	김희리	법령정비, 실태조사 및 유권해석	044)200-7674	044)200-7939
	조수연	교육·홍보, 설명회 및 유권해석	044)200-7679	
	권나라	교육·홍보, 설명회 및 유권해석	044)200-7681	
	강태민	법 위반행위 신고 상담 및 조사·처리	044)200-7678	
청렴조사 평가과	김경용	종합청렴도 평가	044)200-7632	044)200-7940
	김일문		044)200-7633	
	이하윤		044)200-7635	
	연나영		044)200-7636	
	황인준		044)200-7638	
	안영인		044)200-7637	
	윤종선		044)200-7639	
부패영향 분석과	박세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044)200-7656	044)200-0000
	김재현		044)200-7663	
	이종호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044)200-7652	
	권선미		044)200-7661	
	조미애		044)200-7662	
	김아영		044)200-7655	
	이수빈		044)200-7660	
	허지은		044)200-7654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탁금지제도과	한세근	청탁금지제도 업무 총괄	044)200-7703	044)200-7944
	권문택	청탁금지제도 운영 설명회 및 유권해석	044)200-7704	
	정나리	법 바로 알리기 홍보 및 유권해석	044)200-7708	
	박선미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및 유권해석	044)200-7706	
	오정현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및 유권해석	044)200-7707	
행동강령과	정철우	행동강령 제도운영	044)200-7675	044)200-7942
	이종윤	행동강령 이행실태점검	044)200-7677	
채용비리 통합 신고센터	김종혁	공정채용 제도 기획·전수조사 총괄	044)200-7127	044)200-7964
	배영준	공정채용 제도 기획·전수조사 지원	044)200-7711	
심사 기획과	방경아	집중신고기간 운영	044)200-7694	044)200-7943
	이지현	집중신고기간 홍보	044)200-7697	
공공재정 환수관리과	서현우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044)200-7644	044)200-7977
	조강현	이행실태관리 점검, 후속점검 등	044)200-7582	
	박아영	집중신고기간 운영	044)200-7586	
	고채림	교육·홍보, 컨설팅	044)200-7643	
	김선일	이행실태관리 점검, 시스템 관리·운영 등	044)200-7650	
	김시준	청렴노력도 평가, 법령 개정	044)200-7646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보호보상 정책과	문호준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 개정	044)200-7753	044)200-7948
	나현성	신고자 보호 유공자 포상, 공익 신고의 날 행사	044)200-7754	
	김인희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시행령 개정,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 관리	044)200-7757	
	김지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협의회 운영 및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044)200-7755	
	조은수	신고자 보호·보상 교육·홍보	044)200-7750	
신고자 보상과	김혜진	신고자 보상 관련 지침 등 제·개정	044)200-7744	044)200-7947
제도개선 총괄과	김종희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044)200-7219	044)200-7921
	이동식		044)200-7224	
청렴 연수원 (교육 운영과)	구교전	고위직·지방의회 과정 운영	043)901-6132	044)200-7973
	이주영	승진자 과정 운영	043)901-6146	
	조윤서	청렴 감수성 향상 과정 운영	043)901-6148	
	성장미	2030세대·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 운영	043)901-6133	
	이이슬	신규자·내부강사 양성과정 운영	043)901-6134	
	김영일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과정 운영	043)901-6131	
청렴 연수원 (교육 지원과)	김준형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운영	043)901-6118	
	김명혜	고충민원 역량강화 과정, 이러닝 운영	043)901-6121	
	이지수	청렴윤리경영 과정(고위직·담당자) 운영	043)901-6112	